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등 세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학칙 제9조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본 의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한 입학전형위원회 등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분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원회 구분) 위원회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, (삭제 2015.05.26.), 서류평가 위원회, 면접개발 및 출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제3조(조직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 면접개발 및 출제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 -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, 그 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입학의 공정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④ 각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- 제4조(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기능)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다.
 - 1. 입학전형제도의 기본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입학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
 - 3. 합격사정에 관한 사항
 - 4. 입학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
 - 5. 기타 입학전형관리와 관련된 사항
- 제5조(삭제 2015.05.26.)
- **제6조**(서류평가위원회의 기능) 서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전형에 적합한 서류평가 계획 및 기준 수립
 - 2. 기준에 따른 공정한 서류의 심사 및 평가
 - 3. 기타 서류심사평가와 관련된 사항
- **제7조**(면접개발 및 출제위원회의 기능) 면접개발 및 출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면접개발 및 출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 - 2. 면접문항의 개발 및 출제에 관한사항

2-3-11~2 제2편 학 칙

- 3. 면접문항의 채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
- 4. 면접위원 워크숍 등 면접교육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면접 개발 및 출제에 관한 사항
- 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 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사안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장 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(삭제 2015.05.26.) 서류평가위원회 및 면접개발 및 출제위원회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 처리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.
- **제9조**(기타사항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- ① 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임기만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다.

부 칙

이 시행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